

2004년 4월 2일(조간)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노동부
Ministry of Labor

보 도 자 료

▶ 산업보건환경과 이상준 사무관

T E L : 507-0206~7

E-MAIL : LEEJUN@chollian.net

FAX : 503-4491

▶ 2004. 4. 1 배포

▶ 총 7 쪽 (사진별도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“노동부,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자금지원 나서”

- 최대 3,000만원까지, '04. 4월부터 첫 시행 -

□ 노동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장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금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※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, 부적절한 작업자세, 무리한 힘의 사용,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,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 등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목, 어깨, 허리, 상·하지의 신경, 근육 및 그 주변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다.

※ '03년도 근골격계질환자는 4,532명으로 전년대비 148.1%(2,705명) 증가

○ 이번 재정지원사업은 급증하는 근골격계질환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한 조치의 보완('03.7.1)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.

- *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('02.12.30)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'03.7.12)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(붙임 1)를 신설하고 유해요인조사, 작업환경개선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설치 등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11종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(붙임 2)를 정하여 고시('03.7.15)하였다.

□ 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을 자체 개선하기 어려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% 이내에서 최고 3,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.

* 지원규모 : '04년 29억원, 242개 사업장 → '05년 59억원, 597개 사업장 확대예정

* '03년도 전체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의 57% 및 발생근로자의 79%를 제조업이 점유

○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개선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 3%의 장기 저리로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* 융자기간 :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
○ 한편,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CLEAN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업종에 따라 최대 4,000만원 또는 2,000만원까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개선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.

* CLEAN사업장 조성지원사업('04년 200억원, 2,000개 사업장)

- 주물·도금·피혁 및 염색 업종 : 기본보조 1,000만원, 1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50% 이내에서 최고 3,000만원까지 추가보조(최대 4,000만원 지원가능)
- 기타 업종 : 기본보조 1,000만원, 1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50% 이내에서 최고 1,000만원까지 추가보조(최대 2,000만원 지원가능)

- 재정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이동식 대차 및 컨베이어 등 중량물 이동·적재설비, 에어발란스 및 빨판 등 중량물 운반용 보조기구, 중량물운반설비, 무거운 공구 지지대 및 걸이, 높이 및 각도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 및 작업의자, 근골격계질환 발생공정의 자동화설비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의 환경을 인간공학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12종 품목(사진 참조)의 설치비용이다.
- 노동부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방문하여 개선설비의 유지·관리·사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며
- 지원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을 다른 사업장과 비교 평가하고 근로자 및 사업주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재정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.

사업주의 근로격계질환 예방의무 개념적 흐름도



[붙임 2]

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(11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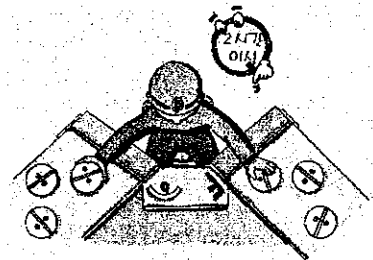
◆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호

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
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



◆ 근골격계부담작업 제2호

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, 어깨, 팔꿈치, 손목
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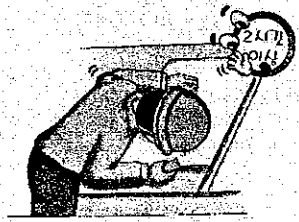
◆ 근골격계부담작업 제3호

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, 팔꿈치가
어깨 위에 있거나,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, 팔꿈
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
작업



◆ 근골격계부담작업 제4호

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,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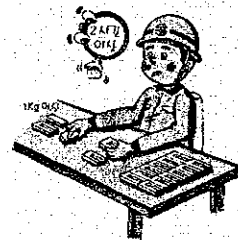
◆ 근골격계부담작업 제5호

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


◆ 근골격계부담작업 제6호

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,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



◆ 근골격계부담작업 제7호

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.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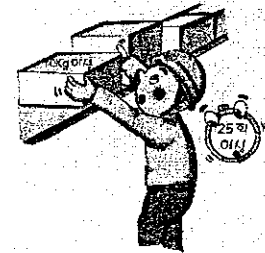
◆ 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

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



◆ 근골격계부담작업 제9호

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, 어깨 위에서 들거나,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



◆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0호

하루에 총 2시간 이상, 분당 2회 이상 4.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



◆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1호

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

